

등록금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등록금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등록금 수납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기일) ① 등록금 납부기일은 총장이 정하되, 당해학기 개시 10일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은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학당시의 등록금 납부기일은 예외로 한다.
 ② 수시입학 합격자는 총장이 정하는 입학금의 일부를 합격자 발표 후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제3조(납부방법) ① 신입생,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는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학생은 매학기(년간 2회)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② 당해학기 등록 후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체 인정한다. (단,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중 십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8.6.4, 2010.12.20, 2014.2.19.)

1. 수업일수 1/3이전 : 등록금 전액 이월

2. 수업일수 1/3 경과 후 ~ 수업일수 1/2이전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을 납부

3. 수업일수 1/2경과 후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업일수 11주이전에 군입대휴학 및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이월한다. (개정 2008.6.4, 2014.2.19.)

④ 8학기를 초과한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1. 신청학점이 1학점이상 3학점이하인 학생은 등록금의 1/6을 납부한다.

2. 신청학점이 4학점이상 6학점이하인 학생은 등록금의 1/3을 납부한다.

3. 신청학점이 7학점이상 9학점이하인 학생은 등록금의 1/2을 납부한다.

4. 신청학점이 10학점이상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다.

제4조(등록금의 반환) ① 과오납인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②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10.12.20)

③ 본인이 수업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학기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10.12.20)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단, 등록금 반환 금액 중 십원 미만은 절상한다.) (신설 2008.6.4.) (개정 2008.6.4, 2010.12.20)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및 휴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휴학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미복학 제적 등의 사유로 등록금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⑤ 학기개시후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 미발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입국하여 제적처리 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1.9.1.)

제5조 삭제 <2009.12.1>

제5조의2(분할납부) ① 등록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2회~4회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분할납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2.5.)

② 신입생 등록금 분할납부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

③ 등록금분할납부를 이용하여 등록한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미등록 제적될 경우 등록금 반환에 관하여는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09.12.1)

④ 직전학기 분할납부자 중 최종 납부기일을 지키지 않은 학생은 차회학기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제6조(가산금) ① 등록금징수에 있어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학칙에 의하여 제적처분된 학생의 등록금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6.3.1.]

부 칙

①(시행일)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단, 편입 및 재입학자는 입학 시 부여되는 기준학년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본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는 (구)등록금에관한규정을 적용한다. 단,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구)등록금에관한규정의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하되, 반환금액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별표의 반환금액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본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②(시행일)본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09.12.1.)

등록금 반환금액 = 기납부한 등록금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대상액 - 등록금 납부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반환금액)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2015.2.5.)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서

1. 학생 인적 사항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전화 번호	휴대폰
주소					

2. 등록금 분할 납부 내역 및 납부방법

가. 납부내역

구분	학점	입학금	수업료	합계	납부일 (예정일)	비고
등록금총액						
1차납부						
2차납부						
3차납부						
4차납부						

나. 납부방법 : 1차 등록금은 _____까지 등록금 납부금액(신청학점)의 1/4이상(2회 분납자는 1/2이상, 3회분납자는 1/3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2~4차 등록금은 상기일정에 따라 지정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타사항 (꼭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가. 상기 본인은 2항의 등록금 분할납부 내역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 정해진 기한 내에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미등록제적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휴학처리는 되지 않습니다.(2006학번 이후)

다. 기 납부된 등록금의 학점만을 인정받고 미납부된 금액의 해당학점은 임의로 수강과목을 취소하는데 동의합니다.(2005학번 이전)

라. 학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칙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 (인)
학생 : (인)

동명대학교 총장 귀하

(학생용)

■ 학번 : 성명 :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 내역

구분	학점	입학금	수업료	합계	납부일 (예정일)	비고
등록금총액						
1차납부						
2차납부						
3차납부						
4차납부						